

나. 임금 지급방식

○ 격주 또는 월급으로 지급

- 해당 월 임금 지급은 다음 달 10일 이내 지급, 임금명세서 교부
단, 임금지급일(10일)이 휴일인 경우, 다음 첫 근무일까지 지급
- 사업 시행기관과 근무자와의 합의에 따라 월급 또는 주급 형태로 지급 가능
- 근무자가 중도 퇴직하는 경우,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지급(근로기준법 제36조)

○ 임금 지급은 사업 참여자 본인의 통장으로 입금

- 임금은 참여자 본인 계좌로만 수령 가능하고, 가족등 타인의 대리수령 불가(대법원 95다 2630 등)
 - ※ 신용불량자의 경우 계좌입금은 가능하며, 계좌압류시 법원에 압류금지 채권의 범위변경 신청을 통해 최저생계비를 입증하도록 안내(민사집행법 제246조 관련)

【붙임 13】 : 참여자에게 위 사항을 반드시 확인

※ 신용불량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
- ▶ 법원에서 발급한 '채무 불이행자 명부'
- ▶ 금융기관에서 발급한 금융 사실 압류통지서
- ▶ 법원에서 발급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등 신용불량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이면 가능

※ 신용불량자인 경우에만 적용 가능(타 사유로 적용 불가)

☞ 현금 지급 시 「표준 현금 지급대장」 작성·관리 참조 : 【붙임 7】